

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(안)

심사보고서

1996. 5. 22.

내무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. 제출일자 : 1996년 5월 16일

. 회부일자 : 1996년 5월 16일

다. 상정일자 : 제125회 임시회

. 제2차 내무위원회(1996. 5. 22)상정,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내무국장 최경주)

가. 제안이유

- 임대주택사업자와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의 지원확대 및 일부 조문을 보완·정리하기 위한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임대주택사업자 및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의 지원확대
 - 공동주택 건축주가 공동주택을 건축 후 미분양등의 사유로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와 매입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분양받

은 후 2월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함 (안 제13조 제1항 및 제2항)

○ 일부 조문의 보완 및 정리

- 1가구 1주택의 개념 정리 (안 제13조 제3항)
-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범위 정리 (안 제14)
- 농촌주택개량등에 대한 감면범위의 정리 (안 제19조 제1항)
-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한 중복감면 배제 (안 제25조)

3. 전문위원검토의견

(전문위원 오창환)

충청북도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,

이는 현행 조례 제5장 (서민주택건설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)

제13조 공동주택에 대한 감면조항 및 제14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조항과 제6장(농어촌지원을 위한감면) 제19조 농어촌주택개량등에 대한 감면조항에 대한 임대주택 사업자와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의 지원확대 및 일부 조문의 보완정리 및 제8장 (보칙) 규정에 있어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한 중복감면 배제조항의 신설과 조항 일련번호를 수정코자 하는 내용으로서,

그 주요 내용으로는

공동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에 있어서 공동주택 건축주가 공동주택을 건축 후 미분양등의 사유로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와 매입 임대 사업자가 임대주택을 분양받은 후 2월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 할 수 있도록 확대함과 아울러 1가구 1주택의 개념을 정리하고자 조문을 보완 하였고,

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에 있어서도

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다세대주택 및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영구임대주택 단지안의 복리시설중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 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시설을 포함하는경우 그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 하도록 확대하고,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 략”

5. 토론요지 : “생 략”

6. 심사결과 : 도원안대로 의결 (참석인원 7인, 찬성 7인)

7. 소수의견요지 : “없 음”

8. 기타필요한 사항 : “없 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

- 신구조문 대비표